

# 제1914호

2023. 4. 13.(목)

발행인 : 영등포구청장  
편집인 : 홍보미디어과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화 : 02-2670-7556

# 영등포구보

## 조 례

- 제160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제160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제160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제161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 제161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 제161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16
- 제161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18
- 제161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21
- 제161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22
- 제161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23
- 제161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 규 칙

- 제84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센터 운영 규칙 .....26

## 고 시

- 제2023-52호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실시계획인가 변경(사업기간) 고시 .....27
- 제2023-53호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실시계획인가 변경(사업기간) 고시 .....28
- 제2023-5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9

## 공 고

- 제2023-735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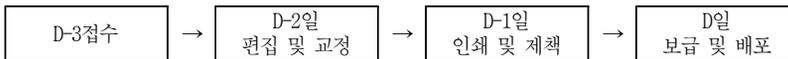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영등포소식→새소식→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670-7556 / 전송: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251-0038-2023

**조 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160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포함한 30명 이상” 을 “포함한”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 가운데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 (이하 “주민자치학교” 라 한다)을 6시간 이상 주민자치학교 이수한 사람이어야” 를 “사람이어야”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을 “신청한”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하며, 주민자치학교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한 보수교육을 임기 중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를 “한다” 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단서 중 “격월 개최” 를 각각 “개최 횟수를 달리 정” 으로 한다.

제2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6호) 중 “동 주민참여예산” 을 “주민참여예산 공모”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1608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을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정” 을 “조성”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위원회의 구성·운영” 을 “거버넌스 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능” 을 “운영”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1609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48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07.02.22, 2009.04.23., 2012.05.17., 2013.12.12., 2018.12.20., 2021.7.15., 2021.12.30.>

위 임 사 무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 삭제 <1999. 8.16>  2.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삭제 <2021.12.30.> 나. 7급이하 지방공무원 소내전보 다. 삭제 <2021.12.30.> 라. 삭제 <2021.12.30.>	「지방공무원법」 제6조 및 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	보건소장
3. 삭제<2000.12. 1> 4. 삭제<2000.12. 1> 5. 삭제<2000.12. 1> 6. 삭제<2000.12. 1>		
7.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약국개설등록 및 변경사항 등록 나. 삭제  다.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라. 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 마. 약국제제의 제조품목신고 및 변경·폐지신고 수리 바.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폐기, 개수,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사. 허가증, 등록증의 갱신, 재발급 아.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	「약사법」 제20조 삭제 삭제 같은 법 제21조의2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같은 법 제69조, 제69조의4,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57조 같은 법 제81조 및 제98조	보건소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8. 의료기기판매업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신고사항 변경, 폐업 등의 신고 나. 지도 감독(보고와 검사 등, 폐기, 사용중지명령,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라. 청문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제32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56조	보건소장
9.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설신고의 수리 나. 변경신고의 수리 다. 휴·폐업신고의 수리 라. 의료기관 감독(지도와 명령, 보고와 업무검사 등, 개설허가의 취소 등,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	「의료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9조,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및 제92조	보건소장
10. 의료기관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설신고의 수리	「의료법」 제35조	보건소장
11. 안마시술소·점골소·침구시술소 개설신고의 수리	「의료법」 제8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에 관한규칙」 제17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보건소장
12.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등록 신청 등 나.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리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개설등록의 취소 등 마. 과태료 부과 징수 바. 시정명령 사. 청문 실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6조	보건소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3.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등록 신고 수리 나.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리 다. 보고와 검사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바. 청문 실시 사. 과태료 부과 징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	보건소장
1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나. 지도·감독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	
15. 삭제<2000.12. 1> 16. 삭제<2021.7. 15.> 17. 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삭제<2000.12. 1> 나. 농지대장의 열람 및 등본의 교부 다. 삭제<2000.12. 1>	「농지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동장
18. 대마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대마취급자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나. 대마취급자 허가증 교부와 등재 및 변경 다. 대마취급자의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라. 사고대마의 사유보고 접수 마. 대마취급자격상실자의 대마처분에 대한 승인 바. 대마재배자의 보고 접수 사. 출입·검사와 수거 아. 대마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차. 청문의 실시 카.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타. 마약류감시원 임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제48조	보건소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19. 삭제<2000.12. 1> 20.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대상자 신청 접수 나. 수급자증명서 발급 다.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수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같은 법 제28조	동 장
21.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동 장
22.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신청·접수에 관한 사무	「기초연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동 장
23.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급여신청 접수 나. 한부모가족 지원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동 장
24. 삭제<2021.7.15.>		
25.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	동 장
26.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동 장
27.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동 장
28. 토지 및 임야대장 발급에 관한 사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동 장
2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동 장
30.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검진 나. 역학조사 다. 치료권고 라. 치료 및 보호조치 등 마. 부양가족의 보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0조	보건소장
31.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독업의 신고수리  나. 휴업 등의 신고수리 다. 서류제출 및 검사 라. 시정명령 마. 영업정지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38조 같은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59조	보건소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32.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역학조사 나.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다.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 라.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마.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바. 감염병 유행에 관한 방역조치 사.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통지 아.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조치 자. 감염병의 예방조치 차. 소독의무 카. 소독업무의 대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29조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같은 법 제41조제3항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6조	보건소장
33. 결핵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결핵관리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결핵 집단발생시 역학조사 다. 결핵검진 라. 결핵예방접종의 실시 마. 업무종사자의 일시 제한 및 해제 바. 입원명령 및 격리치료명령 사.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아. 결핵환자 등의 의료실시 자.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결핵예방법」 제5조제3항 「결핵예방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법 제19조	보건소장
34.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산후조리업 신고수리 나. 산후조리업 승계 다. 보고·출입·검사 라. 시정명령 마. 폐쇄명령 바. 휴업, 폐업 재개신고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아. 청문 실시 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모자보건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제15조의8 같은 법 제15조의9 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제15조의11 같은 법 제15조의13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보건소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p>35.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제공자 등록                      나. 제공자의 준수사항                      다. 부당이득의 징수 등                      라. 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p> <p>36.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필수예방접종의 실시                      나. 임시예방접종의 실시                      다. 예방접종업무의 의료기관 위탁                      라. 예방접종의 공고                      마.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바. 예방접종기록의 보존 및 보고                      사. 예방접종의 역학조사 실시                      아. 예방접종완료 여부 확인</p>	<p>「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40조</p> <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1조</p>	<p>보건소장</p> <p>보건소장</p>
<p>37.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p> <p>38.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지역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시행                      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p> <p>39.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이에 따른 청문                      나.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다. 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라.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이에 따른 청문</p>	<p>「치매관리법」 제17조</p> <p>「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3호, 제2항 및 제10조의2</p> <p>「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제5항, 제20조, 제3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22조제1호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같은 법 제25조, 제32조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2조제2호,</p>	<p>보건소장</p> <p>보건소장</p> <p>보건소장</p>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마.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바. 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사.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이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같은 법 제29조, 제32조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제3호	
40. 정신질환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 및 입원 등 나. 입원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의 확인 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마. 입원기간 연장, (임시)퇴원, 또는 처우개선 등에 대한 심사 청구 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사. 입원기간 연장, (임시)퇴원, 또는 처우개선 등의 명령 또는 결정 아. 입원의 해제 자. 임시 퇴원 차. 외래치료 지원 카. 보고·검사 등 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제43조제6항 및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제47조의2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같은 법 제81조의2 같은 법 제89조	보건소장
41.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나.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수리 다. 의약품도매상 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시정명령 바. 업무개시 명령 등 사. 폐기명령 등 및 사실 공표 아. 개수명령	「약사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제4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의4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및 제72조 같은 법 제74조	보건소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및 이에 따르는 청문 차. 허가증 등의 갱신 카. 허가증 등의 재발급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같은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42.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나. 시정명령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92조	
43.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나.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같은 법 제50조	보건소장
4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각각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행정처분 가.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업무정지 및 폐쇄명령(단,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 나. 청문 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62조	보건소장
4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변경등록 나. 폐업·휴업·재개 신고 다. 지위 승계 라. 보고와 검사 등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2조·제23조 같은 법 제44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같은 법 제4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같은 법 제44조의6, 제69조	보건소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마. 폐기 명령 등 바. 등록취소 사. 청문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자. 면허증 등의 재발급 차. 시정명령	같은 법 제44조의6, 제71조 및 제72조제2항 같은 법 제76조의3 같은 법 제77조제1호의2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같은 법 제69조의4	
46.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통보 등	「의료법」 제38조	보건소장
47.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	동장
48. 마약류 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보건소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1610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을 “서울특별시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 )” 를 “유치사업자(이하 “유치사업자” )” 로, “보건복지부장관” 을 “서울특별시장”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장 및” 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유치업자” 를 “유치사업자” 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업자” 를 “유치사업자”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1611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서울특별시” 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2에 따라 서울특별시” 로 한다.

제2조 중 “일정기간” 을 “1년 이상” 으로,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 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 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원·납품위주 업체·유통사·도매업·종교서적 전문서점·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  
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위원회’ ” 를 “심의·  
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위원회” 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1612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2. “출산 및 양육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3.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출산장려사업”이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적·인종·종교·나이·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출산 및 양육지원)**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사업 지원
  2.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3.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4.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5. 출산 및 양육지원 관련 법령·제도의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2(산후조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신생아의 주민등록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인 출산가정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구에 실제 체류하고 있는 경우
-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의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 ③ 산모 또는 배우자 등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또는 체류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산모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 ⑥ 그 밖에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1613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최 호 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계획
7.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8.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돌봄 지원
6.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8.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
9.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10.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1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12.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
13.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 ③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 확보 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 ④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

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의2 삭제**

**제9조(복지시설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확충 및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 또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홍보)** 구청장은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 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 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신고의무)**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1614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최 호 권  
2023년 4월 1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  
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세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  
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1615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부구청장” 을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재난관리,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등” 을 “재난관리” 로 한다.

#### 3.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1616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들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  
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 공간”이란 「하천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하천구역의 공간으로서 제방부지와 제  
외지 공간을 포함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연환경·  
시설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여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  
한 기회를 가지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련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하천 공간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자연이 건  
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추진해야 한  
다.
2. 하천 공간의 자연생태계를 보전·보호 또는 복원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구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공생·공영하는 하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해야 한다.
3. 하천 공간의 모든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며 공익에 적합하고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지·관리가 돼야 한다.
4. 하천 공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  
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여 수행하되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5. 하천공간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하천 기본계획이나 방침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구 행정관할에 속하는 하천(도림천, 안양천, 대방천)들의  
하천 공간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천 공간의 보전과 구민 이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하천 공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하천 공간을 적정하게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책무)** ①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구민은 하천 공간의 하천시설물과 친수시설물 등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하천 공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하천 공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별표 1에 서 정한 하천 공간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 및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9조(공간이용 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하천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장소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간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하천보전활동 협력)** 구청장은 하천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하천보전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깨끗한 하천환경 유지를 위한 활동

2. 하천 훼손, 생활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

3. 하천환경 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

4. 하천의 재해위험요인 감시와 예방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 구청장은 하천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협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하천관리 및 보전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조끼, 장화, 면장갑, 집게, 쓰레기봉투, 빗자루, 기타 물품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하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1617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서울특별시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 노외주차장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84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센터 운영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센터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센터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20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요업무)** 센터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센터 조성 및 관리, 운영 업무
2. 문화도시 지정 및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업무
3. 문화도시 거버넌스 운영 지원 업무
4. 문화도시 사업공간의 조성 및 관리, 운영 업무
5. 문화도시센터 인력배치 및 성과관리, 예산집행 등 행정 업무
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며, 조직과 인력 배치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센터의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자체 운영규정)**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3-52호

##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실시계획인가 변경(사업기간) 고시

1. 건설부고시 제232호('77.12.1.)로 최초 결정, 건설부고시 제349호('79.9.24.) 및 영등포구고시 제2020-84호('20.5.1.)로 변경 결정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21-73호('21.4.15.)로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당산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가. 사업의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23-1번지 일대(변경 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사업  
 - 명 칭: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26.73㎡(변경 없음)  
 - 지하철 2호선 당산역 3번 출입구: 26.73㎡(엘리베이터)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 명: 서울교통공사 (대표자: 김상범)  
 -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마. 사업의 기간(사업의 착수·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2021년 4월 15일 ~ 2023년 4월 14일  
 - **변경: 2021년 4월 15일 ~ 2023년 9월 30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변경 없음)

번호	위치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1	당산동6가	323-1	도	10,049.6 ㎡	26.73㎡	서울특별시		
합 계				10,049.6 ㎡	26.73㎡			

-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변경 없음)  
 - 도시계획시설(철도) 구역 내 모든 철도시설물은 교통공사로 무상귀속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2670-353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3-53호

##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실시계획인가 변경(사업기간) 고시

1. 건설부고시 제232호(' 77.12.1.)로 최초 결정, 건설부고시 제349호(' 79.9.24.) 및 영등포구고시 제2020-14호(' 20.1.16.)로 변경 결정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21-68호(' 21.4.15.)로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영등포구청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가. 사업의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7-4번지 일대(변경 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사업
  - 명 칭: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68.2㎡(변경 없음)
-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입구: 68.2㎡(에스컬레이터)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 명: 서울교통공사 (대표자: 김상범)
  -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 마. 사업의 기간(사업의 착수·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2021년 4월 15일 ~ 2023년 4월 14일
  - **변경: 2021년 4월 15일 ~ 2023년 9월 30일**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변경 없음)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	당산동3가	387-4	도	10,187.6㎡	68.2㎡	서울특별시		
합 계				10,187.6㎡	68.2㎡			

-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변경 없음)
- 도시계획시설(철도) 구역 내 모든 철도시설물은 교통공사로 무상귀속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2670-353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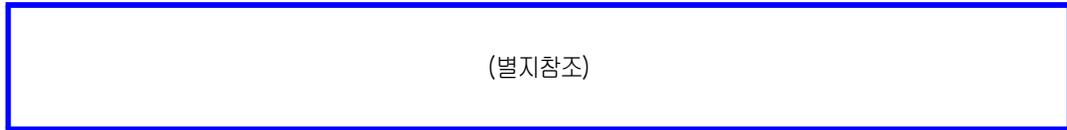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 2023-54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43길 6(당산동1가) 외 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2)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 부여 조서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동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18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43길 6 (당산동1가)	2023 0413	신규 부여	2010 0527	영신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82, 18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61 (양평동1가)	2023 0413	신규 부여	2010 0422	역사성이 많은 영등포 지명 인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3-735호

### 직 인 인 영 공 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에 의거 등록된 직인의 인영을  
동 규칙 제11조에 의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직인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향사랑기금운용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향사랑기금출납원

**나. 직인최초사용 연월일** : 2023. 4.

**다. 직인의 인영 및 내역**

직 인 명	서체 및 규격 재질	인 영	사용부서	용 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고향사랑기금운용관	한글전서체 2cmx2cm (정방형) 플라스틱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출납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고향사랑기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x1.8cm (정방형) 플라스틱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출납